

# G20 정상회의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응방향

2010. 5. 4.



- 
- 작성자 : 이 창 근(민주노총 정책국장), 메일주소 bulnavi@gmail.com, 2670-9111
  - 민주노총 정책보고서는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목 차>

### 1. G20 출범 배경과 G20 정상회의 개괄

- 1) G7/G8 역사와 문제점
- 2) G20 탄생과 전망
- 3) 워싱턴, 런던, 피츠버그 정상회의 개괄

### 2. 주요 쟁점 분석

- 1) 금융규제 개혁
  - (1) 위기 비용 금융권 분담 - 은행세와 금융거래세
  - (2) 대형금융기관 감독 강화 방안 - 대마불사 방지와 금융안전위원회
  - (3) 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
  - (4) 기타 금융규제
- 2) 위기 이후 체제 :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체제
- 3)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 4) 좋은 일자리, 사회보장과 ILO
- 5) 개발도상국 지원, 기후변화, 무역
  - (1) 개발도상국 지원
  - (2) 기후변화 대응 -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 (3) 보호무역주의 배격 - '자유' 무역 보호

### 3. G20 문제점

### 4. 서울 정상회의 주요 의제와 대응 방향

- 1) 서울정상회의 주요 의제
- 2) 국제노동계 대응 개요
- 3) 대응 방향

## <요약>

### □ G20 정상회의 탄생 배경

①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한 신흥개도국의 경제적 지위 반영, ②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의 핵심 당사국들인 중국, 인도, 한국 등 경상수지 흑자국이면서 대규모 외환(달러)보유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인 금융·경제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마련이 어렵다는 인식, ③ 국제지배구조(Global Governance) 측면에서 최근 G2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경제·금융 현안에 관한 국제 논의 틀로 실질적으로 포섭하고 동시에 견제할 필요성 등. ⇒ 결론적으로 G7/G8 논의만으로는 근본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G20 정상회의 출범함.

### □ G20 정상회의 논의 동향과 주요 합의 사항

[표1] G20 정상회의 논의 동향과 주요 합의사항

	1차 정상회의(워싱턴)	2차 정상회의(런던)	3차 정상회의(피츠버그)
주요 합의사항과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규제 원칙에 관한 포괄적 합의 - 체계화된 정책대안 불분명</li> <li>* 경기부양 원칙 합의</li> <li>* 보호주의 배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MF 등 기존 국제기구를 통한 위기 극복 합의</li> <li>* 경기부양책 지속</li> <li>* 금융규제 세부대책 합의</li> <li>* 금융안정위원회 설치</li> <li>* IMF 개혁 원칙 합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부양 지속 - 출구전략 시기상조</li> <li>* 위기비용 금융권 분담방안 IMF에 초안 마련 지시</li> <li>* 건전성 규제, 금융권 보상체계 개선 방향 합의</li> <li>* '위기-이후' 체제 논의 개시</li> <li>* 일자리, 기후변화 등 의제 확대</li> <li>*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세부방향 합의</li> </ul>

### □ G20 정상회의 문제점

○ G20 정상회의는 세계 금융·경제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속에서 탄생했지만, 절대 다수 국가 특히 국제금융기구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저개발국가와 아프리카 국가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대표성과 정당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음.

○ G20 정상회의는 지난 20년 동안 대대적인 불평등을 발생시킨 신자유주의 정책의 중단과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 금융화에 기반한 자본주의 체제 위기를 봉합하는 데 그치고 있음.

○ G20은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주변부 국가들에 강요했던 IMF, 세계은행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 집행자를 근본적인 개혁과 평가 없이 복권시킴.

○ G20이 심혈을 기울여 논의하고 있다는 금융규제(Financial regulation) 방안은 ‘은행의 대형화·겸업화 규제’, ‘금융거래세 도입’ 등 추가적인 금융위기와 투기거품 방지를 위한 핵심 ‘알맹이’는 부차화되거나 빠진 채 논의되고 있으며, 합의 사항에 대한 각국의 실행의지도 의심스러움.

○ G20은 지속가능한 경기회복을 위해 핵심 원칙으로 존중되어야 할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기본권 보장’, ‘소득불평등 해소와 사회보장 확대’ 등 사회적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부차화되거나 립 서비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G20에 대한 주요 대응 방향

- ①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금융자본 통제 획기적 강화 - 은행의 대형화·겸업화 금지와 금융거래세 도입
- ② 신자유주의 정책 집행자 IMF 복권 반대
- ③ 실패한 미국식 금융자유화 모델을 토대로 한 FTA와 WTO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중단
- ④ G20에서 논의·합의되고 있는 금융규제 경향과 상반되는 이명박 정부의 구시대적 자본시장통합법 및 금산분리완화 정책 폐기
- ⑤ 위기-이후 체제를 위한 핵심 가치로 ‘노동기본권 보장’, ‘좋은 일자리’, ‘사회보장 확대’ 를 채택·실행
- ⑥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녹색일자리 장려하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지
- ⑦ 세계적 차원의 기후·환경 재앙을 피하기 위한 노력과 상반되는 4대강 사업 중단, 녹색성장기본법 폐기
- ⑧ 개도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확장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의 잘못된 구제조건 부과 중단
- ⑨ G20 빌미로 노동기본권 억압하고 공안정국 조성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
- ⑩ 위기 비용 전가하는 G20 규탄.

## 1. G20 정상회의 출범 배경과 G20 정상회의 개괄

### 1) G7/G8 역사와 문제점

□ G7은 1971년 미국의 달러-금태환 중지 선언에 따른 브레튼우즈 체제<sup>1)</sup> 위기에 대한 중심부 국가들의 대응 차원에서 탄생함.

○ 1973년 4월, 미국, 서독, 프랑스, 영국 등 4개국 재무장관이 백악관에서 회동함. 이를 계기로, 1975년 위 4개국에 일본과 이탈리아를 포함한 G6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1976년 미국의 요청으로 초청된 캐나다를 포함시켜 G7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열림.

□ G7 정상회의는 환율, 국제수지, 세계화, 무역, 개도국과의 경제적 관계 등 거시경제 정책을 주요하게 다룸.

○ G7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합의는 1975년 첫 번째 정상회의에서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전환하고 IMF 관련 규약을 개정한 것임.

○ 플라자 합의(1985년) 및 루브르 합의(1987년)도 중요한 합의임. 1985년 플라자 합의(Plaza Agreement)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강한 달러 정책에 따른 미국의 쌍둥이 적자 누적과 이로 인한 달러 폭락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 인위적인 달러화 절하를 유도한 합의임. 1987년 루브르 합의(Louvre Accord)는 추가적인 달러화 하락을 막고 환율의 안정화를 피하기 위한 합의임.

---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 1944년 미국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우즈에서 창립된 국제통화체제를 의미함.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여 각국 화폐의 상대적 가치를 고정시킨 체제(고정환율제)임.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을 설립함. 이 체제는 미국이 달러를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준다(금태환)는 전제하에 성립됨.

□ 시기별 주요 의제와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표 2] G7/G8 정상회의 시기별 주요 의제와 특징

시기	주요 의제와 특징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무역, 경제성장, 개발원조, 에너지 안보 등</li> <li>○ 고정환율제 → 변동환율제</li> <li>○ 1979년 2차 석유위기 대응</li> </ul>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플레이션 억제와 달러화 안정이 주요 목표</li> <li>- 1980년 베니스 선언 : “인플레이션에 맞서 싸우고, 에너지 위기 해결하기” (fighting inflation and resolving energy crisis)</li> <li>- 달러화 안정을 위한 플라자합의(Plaza Agreement 1985)와 루브르 합의(Louvre Accord, 1987)</li> <li>○ 제3세계 외채 위기 대응</li> <li>○ 구(舊)소련체제 해체 공동 대응</li> </ul>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7 → G8</li> <li>- 1991년 러시아를 처음 초청. 1998년 공식 멤버십 획득.</li> <li>- 하지만 러시아는 경제정책 논의에서 배제됨.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G7으로 진행됨.</li> <li>○ 세계화와 대테러리즘이 주요한 의제로 등장</li> <li>- 1996년 리옹 정상회의 선언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운 성공적인 세계화 만들기” (making a success of globalisation for the benefit of all)</li> <li>- 1995년 테러리즘에 관한 G8 전문가그룹 결성, 대(對)테러리즘 장관회의 개최</li> <li>○ 1995년 멕시코 위기 공동 대응</li> <li>○ 의제가 정치, 사회, 환경 영역으로 확장됨.</li> </ul>
1997년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 금융위기 공동 대응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구성(1999년)</li> <li>○ G8 공식 출범(1998년)</li> <li>○ 아프리카 개발(1997년 이후 주요 의제로 등장)</li> <li>○ 코소보 위기</li> <li>○ 1999년 퀘벡 정상회의에서 중채무빈국 외채탕감계획(HIPC Initiative) 합의</li> <li>○ 세계화, 초국적기업, 다자간기구개혁, 기후변화 등이 주요 의제임.</li> </ul>

□ G7은 초기 고정환율제→변동환율제 전환, 플라자·루브르 합의 등 달러화 안정을 위한 환율관리가 중요한 정책 목표였으나, 금융세계화가 진전되고 민간의 국내외 외환거래가 증가하면서 외환시장 개입 효과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면서 주요 목표에서 벗어남.

○ 1995년 캐나다 헬리팩스 회의에서 IMF 기능을 강화하고, IMF가 회원국의 경제정책에 적극 개입할 것을 합의함. 이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뒷받침하고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임.

○ 1990년대 이후 세계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개도국 발전, 외채 문제 등이 주요한 논의 의제로 대두됨. 1996년 리용 회의에서 개도국 발전이 주요하게 논의되었고, 1997년 덴버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문제를 다룸.

□ G7/G8은 비공식적인 회의체임에도 IMF, 세계은행, WTO 등 다자간국제기구의 정책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음.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1년에 4차례 열리는데 그 중 2차례가 봄, 가을의 IMF와 세계은행 총회 전에 진행됨. G7은 사전논의를 통해 IMF와 세계은행의 의제와 결론을 사실상 지배함. 이들은 금융자유화,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구제조건(conditionality)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합의하고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음.

○ 이에 G7/G8은 대표성, 합법성, 포괄성, 투명성, 민주성 등에 있어서 광범위한 비판에 직면함. “어떻게 소수의 엘리트 클럽이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민중들에게 영향을 미칠 의제를 공정하게 논의할 수 있겠는가” 라는 점이 핵심임.

## 2) G20 탄생과 전망

□ G20은 1997/98 아시아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출발함. 1990년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신흥개도국의 외환·금융위기는 금융세계화 체제의 안정과 지속에 위협적인 요소였음. 따라서 주변부 국가의 경제·금융당국을 국제적인 논의 공간으로 끌어들이기 필요성이 제기됨. 이런 맥락에서 G22→G26→G33을 거쳐 1999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로 정례화됨.

[표 3]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출범 경과

- 1997년 11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밴쿠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국제금융체제 개혁을 위한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로 G22를 제안함.
- 1998년 4월 워싱턴에서 G22 회의가 처음 개최됨.
- 1998년 10월 G26 회의로 확대됨.
- 1999년 3월 국제금융안정과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논의를 위해 G33으로 확대됨.
- 1999년 9월 IMF 연차총회 당시 개최된 G7 회의에서 G20 창설에 합의함.
- 1999년 12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처음 개최됨.

□ G20 경제·금융당국 각료회의는 2008년 세계적인 경제·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정상회의로 격상됨. G7/G8이 존재함에도, G20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논의 장으로 탄생한 데는 아래의 정세적 요인들이 작용함.

○ 첫 번째,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한 개도국의 경제적 지위를 감안하면, G7/G8만으로 세계 경제위기 대응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1980년, 1996년, 2006년 구매력 평가 GDP를 기준으로 세계경제에서 각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G7은 54%, 46%, 40%로 감소한 반면 G7을 제외한 G20의 비중은 21%, 30%, 36%로 증가함.

- G20은 전 세계 GDP의 85%(2008년 기준), 세계인구의 2/3를 차지함. 외환보유고의 비중은 세계 전체 외환보유액의 81%에 달함.

○ 두 번째, 글로벌 불균형의 핵심 당사국들인 중국, 인도, 한국 등 경상수지 흑자국이면서 대규모 달러보유국을 제외하고는 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힘들다는 현실 인식.

- 글로벌 불균형은 전 세계적인 무역수지의 적자 혹은 적자의 불균형을 의미함. 특히 미국이 전 세계 경상수지 적자 국가의 총 적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달함.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000년대 이후 평균 26%정도이지만 최근 30~35%에 육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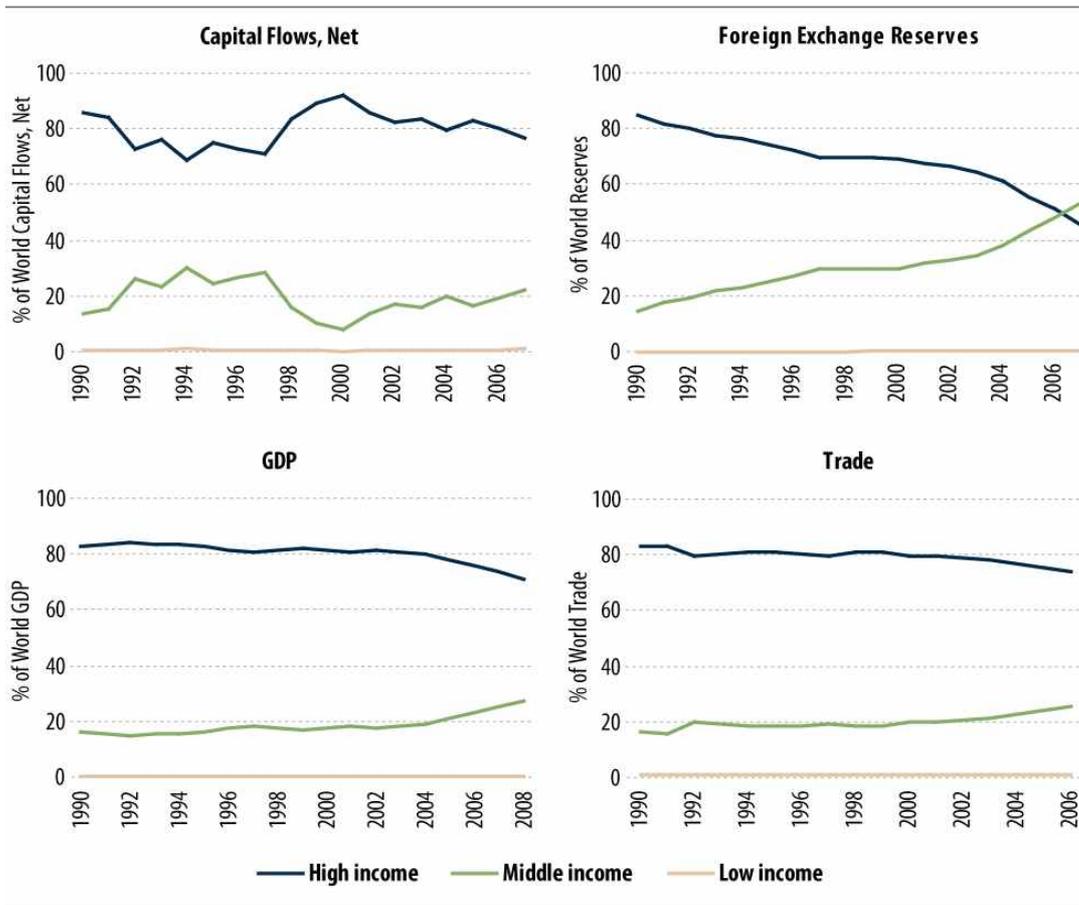
- 반대로,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자금과 저축은 위기에방 차원에서 미국 국채를 대거 매입하면서, 미국 밖으로 나간 달러화가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옴. 이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금리와 높은 달러화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임.

- 또한 이처럼 환류된 달러는 미국의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에 투자되면서 거품을 일으키게 됨(부동산 거품, 서브프라임 위기 등). 이런 맥락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금융 위기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결국 세계 경제·금융위기 대응과 위기 이후 체제를 G7/G8만으로 논의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세 번째, 국제지배구조(Global Governance)의 측면에서 최근 G2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경제·금융 현안에 관한 국제 논의 틀로 실질적으로 포섭하면서 동시에 견제할 필요성.

- G20의 회원국 자격 결정에 있어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G20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함.

[그림 1] 세계경제에서 증가하는 신흥국의 지위



Sourc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Capital includes portfolio investment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sup>2)</sup>

□ G7/G8에서 G20으로의 전환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다만, G7/G8 체제와 비교하면 G20의 세력관계는 미국의 영향력과 권한 유지, 유럽세 약화, 아시아·태

2)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G-20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평양지역 비약적 강화, 아프리카 지역 소외로 특징지워 짐. 이는 미국의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경제 및 무역관계 강화 계획과 일정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 미국은 호주,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과 범태평양파트너십무역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rade Agreement, TPP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차원의 자유무역협정 논의 개시를 적극 주장하고 있음.

□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G20은 국제경제 조정과 협력을 위한 최상위 논의의 장 (premier forum for international economic coordination)으로 선언됨. G20은 금융규제, 국제금융기구 개혁에서부터 일자리, 식량안보, 기후변화, 에너지까지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있음. G20이 G7/G8을 완전히 대체하기 보다는, 경제정책은 G20, 정치·안보 문제는 G7/G8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됨.

[표 4] G20 정상회의 참가국 및 다자간 기구

국가	다자간 기구
G7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회의(European Council)
아시아 -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국제통화기금(IMF)
남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신(新)아프리카개발파트너십(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유럽 - 유럽연합(EU) 의장국, 러시아, 터키	국제연합(UN)
참관 - 스페인, 네덜란드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무역기구(WTO) 국제노동기구(ILO) <sup>3)</sup>

3)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부터 국제노동기구(ILO)가 초청받아 참가함. 하지만, ILO의 참가는 다른 국제기구에 비해 보조적인 지위에 머무르고 있음.

### 3) G20 정상회의의 개괄

#### (1) 워싱턴 정상회의(2008. 11. 14~15, 워싱턴 D.C.)

- 1차 정상회의는 미국 대선을 바로 앞둔 시점에 진행됨. 이에 곧 퇴임할 부시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G20이라는 틀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음.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 회의는 세계경제위기 관리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으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가운데 포괄적 원칙을 합의하는데 그침.
- 국제적인 금융 규제 기준과 감독 강화(①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② 금융규제·감독 개선, ③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 ④ 국제협력 강화, ⑤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일국적 차원의 규제개혁 강화, 총수요와 경제성장 유지 혹은 최소한 악화 방지를 위한 재정 및 화폐 팽창적인 거시경제정책 사용, 보호무역주의적 정책 사용 억제 등을 합의함.

#### (2) 런던 정상회의(2009. 4. 1~ 2, 런던)

- 런던 정상회의는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실물부문의 전이되는 상황에서 열림. 경기부양책(stimulus package)이 주요한 의제로 대두되었으며, 워싱턴 정상회의의 합의를 재강조함. 동시에 몇몇 정책 대응에서는 보다 구체화된 합의안이 마련됨.
- 런던 회의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보다는 IMF 등 기존 기구 활용을 통한 위기 극복에 합의했다는 점임.(IMF 등 신자유주의 집행기구들의 복권) 즉, 경기부양을 위해 IMF와 다자간개발은행(MDBs) 기금 1조 1천억 달러의 재원 조성에 합의하고, 금융규제와 감독체제 개선에 관해서는 재정안정포럼(FSF)을 확대 개편하여 재정안정위원회(FSB)를 설치하기로 함.<sup>4)</sup> 또한 향후 2년 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5조 달러의 재정을 지출하기로 함.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관해서는 개도국 대표성을 확대하기로 했으나(2011년 1

4) 재정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은 1999년 아시아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제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창설됨. 재정안정포럼은 G7 국가에 호주,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네덜란드가 참여하여 구성된 국제금융시장 감시 기구였음.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금융 규제 강화를 위한 정책 조정과 감시 권한을 갖고, G20 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로 확대 개편됨.

월까지 IMF 투표권 조정), 구체적인 조치가 논의되거나 제안되지는 않았음. 또한 ‘IMF 총재는 유럽,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 이라는 관례를 깨고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능력위주의 선출과정” 을 거치기로 함. 더불어 WTO 도하라운드 협상 완료, 해외 원조 확대 등을 합의함.

### (3) 피츠버그 정상회의(2009. 9. 24~25, 피츠버그)

□ 피츠버그 정상회의는 세계적인 위기가 바닥을 치고 미약하지만 회복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열림. 이에 피츠버그 정상회의는 G20 위기 대응의 성과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위기 이후 관리 체제와 미약한 경기 회복 신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실업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됨.

□ 핵심적으로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출구전략’ (exit strategy)은 시기상조이며,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체제’ (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가 위기 이후 프레임으로 제안됨. 또한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 개선이 처음 언급되고, 향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틀의 창설을 선언함. 또한 IMF와 세계은행에서 개도국의 대표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선언됨. IMF의 쿼터 5% 이상을 개도국으로 이전하고, 세계은행의 경우 3% 이상을 이전하는 데 합의함. 동시에 피츠버그 회의에서는 의제가 확대되어 고용,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최빈국 지원 등도 다뤄짐.

[표 5] G20 정상회의 논의 동향과 주요 합의사항

	1차 정상회의(워싱턴)	2차 정상회의(런던)	3차 정상회의(피츠버그)
주요 합의사항과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규제 원칙에 관한 포괄적 합의 - 체계화된 정책대안 불분명</li> <li>* 경기부양 원칙 합의</li> <li>* 보호주의 배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MF 등 기존 국제기구를 통한 위기 극복 합의</li> <li>* 경기부양책 지속</li> <li>* 금융규제 세부대책 합의</li> <li>* 금융안정위원회 설치</li> <li>* IMF 개혁 원칙 합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부양 지속 - 출구전략 시기상조</li> <li>* 위기비용 금융권 분담방안 IMF에 초안 마련 지시</li> <li>* 건전성 규제, 금융권 보상체계 개선 방향 합의</li> <li>* ‘위기-이후’ 체제 논의 개시</li> <li>* 일자리, 기후변화 등 의제 확대</li> <li>*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세부방향 합의</li> </ul>

## 2. 주요 쟁점 분석

### 1) 금융규제 개혁

□ G20은 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금융규제·감독 실패”,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들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위험부담 행위”를 지목하면서, 국제 금융규제체계 개혁을 논의함.

[표 6] 금융규제 개혁에 관한 G20 논의 동향과 대응

현안	G20 논의 동향과 대응	
건전성 규제	자본금 규제의 대폭적 강화 - 보통주 중심으로 은행자본의 질과 양 강화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sup>5)</sup> 완화 - 완충자본 적립 및 레버리지 비율 도입 위험관리 - 위험한 금융상품과 장부외거래에 대한 높은 자본충족요건 부과 유동성 규제 - 장단기 유동성 기준 수립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본금 및 유동성 규제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	대형 금융기관 부실 가능성 축소	공동감시단을 통한 감독 강화 업무 범위 제한(특정 활동 및 규제되지 않은 영업 금지 등) 은행 규모 제한(시장점유율과 규모 제한) 법률적 구조 단순화(자회사 vs. 지점), 국경간 영업 제한 등 자체적인 도산계획(living will) 주기적 제출
	정리역량 강화	위기관리그룹 설립 국경간 정리 체계 수립
위기비용 분담	은행세(금융안정분담금, 금융활동세) 국제금융거래세 보험수수료 등	
금융회사 보상체계 개편	상여금 지급 규제 강화, 보장된 상여금 지급 제한, 공시 강화,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변동보상을 순이익의 일정비율로 제한	
신용평가기관 규제	정부 등록, 국제행동규범 준수	
조세피난처 규제	비협조 지역 명단 공개 및 규제책 마련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거래저장소에 보고 표준화된 상품은 12년까지 중앙청산소(CCP) 통해 청산 비중앙청산소 거래에 대한 높은 자본 부과	
헤지펀드·사모펀드 규제	정부 등록, 투자하는 상품의 위험 정보 공개	

5) '경기순응성'은 호황기에는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이 양호해지면서 대출이 더욱 늘어나는 반면, 불황기 또는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자산을 경쟁적으로 매각하여 부채축소에 나서면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현상을 의미함. '경기순응성 완화'는 이러한 증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호황기에 은행들에게 완충자본 확대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대신 불황기에 대출을 확대하여

## (1) 위기 비용 금융권 분담(Burden Sharing) - 은행세와 금융거래세

□ 세계금융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로 지목된 금융권에 책임을 물어 공적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된 은행권 구제금융을 회수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대비하는 기금을 적립 하겠다는 취지로 논의가 시작됨. 즉, 위기 비용의 금융권 분담을 강제하는 조치임. 이 논의는 은행권에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쏟아 부은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제안함.

□ IMF는 지난 4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제출한 초안에서, ① 보험회사와 헤지펀드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금융안정분담금, 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 ②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과 보너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금융활동세, Financial Activities Tax) 등 두 가지를 제시함.

○ 금융안정기금은 은행의 자산과 부채에 일정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임. 이는 특정 은행이 전체 금융시스템을 훼손할 수 있는 대규모 자본조달이나 과도한 투자 규모를 억제하기 위해, 단기 차입으로 조달하는 ‘비예금성 부채’에 초점을 맞추게 됨.

○ 금융활동세는 일정 수준이 넘는 은행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임. 금융기관의 이윤과 보수 총액에 부과하는 특별세 형태의 세금임.

○ 은행세가 부과되면 G20 GDP의 2%~4%, 약 1조~2조 달러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측됨.

□ 한편 국제노동계와 브라질 정부 등은 금융위기와 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금융권에 분담시키고, 동시에 금융투기와 또 다른 재앙적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조치로 국제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FTT)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G20 차원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없음.

경기회복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의미함.

[표 7]토빈세 : “국제금융시장의 톱니바퀴에 모래 뿌리기”

토빈세(Tobin Tax)는 1981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가 처음 제안함. 국제투기자본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에 의한 통화·외환위기를 막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됨. 처음에 제안한 세율은 1%였으나, 그 이후 0.1% ~ 0.25%로 낮춰졌음. 즉, 단기 투기성 자본거래에 과세하는 방식이었음. 하지만 최근에는 외환거래 위주의 전통적 토빈세에서 국제 금융거래세라는 더 확장된 맥락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IMF 총재는 금융거래세에 대해, a) 소비자가 지불하는 소비세 (consumption tax)의 성격이고, b) 거래할 때마다 과세되는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며, c) 과세를 회피하는 또 다른 파생금융상품이 개발될 것이라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지난 4월 워싱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국가들간 의견차이로 구체적인 은행세 도입 방안을 합의하는 데 실패하고, “은행시스템 복구비용을 금융회사들이 부담하고 과도한 위험 부담행위를 억제하는” 등 기본요건에 대해서만 합의함. 특히 캐나다, 인도, 브라질 등의 국가들이 자국 은행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은행세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고 알려짐.
- 은행세 도입에 있어서의 세부적 쟁점은 ① 세금으로 할지, 수수료로 할지 ② 은행 자산 전체에 부과할지, 일부 위험자산에만 부과할지 ③ 세율(수수료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④ 기금 조성 방식을 어떻게 할지 등임.
- 금융거래세의 경우 ① 규제에 따른 비용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 투기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규제회피행동(regulation arbitrage)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② 세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③ 과세를 통해 조성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④ 과세관할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이 세부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은행세와 금융거래세 등 위기비용 금융권 분담 방안은 특정 국가만 시행할 경우 규제에 따른 비용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투기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규제회피행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적임.

## (2) 대형금융기관 감독 강화 방안 - 대마불사(too-big-to-fail) 방지와 금융안정위원회(FSB) 설립

- G20은 이번 금융위기의 핵심 교훈으로 금융의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을 지목하고 있음. 즉, 위기의 전이 과정에서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금융회사가 부실화되었는데, 이를 적시에 정리하지 못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연쇄적인 연결고리로 인해 ‘체계적 위험’이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되는 경향을 의미함.
- 이런 맥락에서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을 어떻게 규제·감독할 것인가가 중요해짐. 이에 G20은 대형금융기관의 부실화 가능성을 축소하고(규제/감독 강화),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여 정리하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공동감시단(supervisory college)을 설립하여 거대 복합금융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대형금융기관에는 건전성 규제를 추가하기로 함. 즉, 추가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부과하기로 함.
  - 위기 발생시 신속한 정리를 위해,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위기관리그룹 및 위기관리를 위한 법적 개입체계를 마련” (피츠버그 합의문)하고, 국제적으로 일관된 회사별 위기대응 계획을 수립하기로 함.
- 한편, 대형금융기관 규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은행의 대형화”를 규제·제한할 것인가임. 이에 관한 중요한 동향으로는 소위 ‘볼커 룰(Volker rule)’이라고 불리는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개혁법안임. 이 안의 핵심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과도한 위험 투자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업무 범위와 규모를 제한하는 것임.
  - 은행과 은행지주회사가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의 보유와 투자를 금지하고, 동시에 자기자본 투자를 금지시키는 것.
  - 동시에 은행의 규모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함. 시장점유율 10%를 초과(부채 기준)하는

금융회사는 추가적인 인수합병이나 지분 인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 이 안의 핵심은 고위험 고수익을 부추기는 주식·채권·외환·원자재·파생상품 등에 대한 직접 투자,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소유와 투자 운용을 금지하는 것임.

□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흐름이 G20 차원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수렴될 지는 미지수임. 현재로서는 건전성 규제, 금융감독 강화, 위기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리 수단과 체계 수립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 한편 금융시장 개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금융안정위원회는 대형금융기관에 관한 세부적 대책을 2010년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임. 또한 규제개혁에 관한 일국적인 차원의 이행을 비교하고 국가간 차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행동의 필요성을 규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3) 은행 자본 건전성 규제 강화

□ 세계 금융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은행권의 취약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1)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기시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해 자본금 규제 대폭 강화, 2)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완화를 위해 완충자본 적립, 3) 유동성 위험 및 과도한 차입투자(레버지리) 규제 등이 논의되고 있음.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지난해 12월 17일 건전성 규제에 관한 초안을 발표함.

○ 은행의 자본구성을 보통주 중심으로 강화. 신종자본증권 등에 대한 자본인정요건을 강화함.

○ 은행들이 호황기에 최저 자본 요구량(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으로 완충자본을 적립하여, 이를 불황기에 사용하도록 함. 호황기 최저 자본 요구량을 12% 이상으로 높임. 즉, 호황기에 완충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는 은행에 대해서는 자본분배(배당, 상여금 등) 제한 등 제재하기로 함.

- 은행 자산이 자본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차입투자(레버리지) 비율 규제 도입. 자본구성 요건이 보통주 중심으로 강화되다 보니 과거처럼 보통주를 제외한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과 후순위채 등으로 자본 확충을 쉽게 할 수 없음.
- 유동성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위기사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sup>6)</sup>과 순안정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NSFR)<sup>7)</sup>을 도입함.

#### (4) 기타 금융규제 - 헤지펀드, 신용평가기관 규제, 보상금 규제 등

-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을 전세계에 유통시켜 금융위기 확산 주범 중 하나였던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안이 런던정상회의에서 합의됨. 헤지펀드는 해당국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하며, 투자하는 상품의 위험정보를 공개해야 함.
- 신용평가기관은 이해관계에 기반한 신용평가를 통해 금융위기 발발에 기여했음. 무디스, S&P 등의 신용평가기관들은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중립적인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위치를 누려왔음. 신용평가기관 역시 해당국 정부에 등록을 하고, 국제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규제를 받게 됨.
-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됨. 지난 위기 당시 많은 금융기관들, 심지어 은행들마저도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세우고 장부의거래를 통해 회계규정을 피하면서 무리하게 파생상품에 투자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 OECD 권한 아래 조세피난처 명단을 작성하고 해당국에 제재를 가함.
- 과도한 위험부담(risk-taking) 행위를 부추기는 금융회사 경영진 보상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상여금 지급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보장된 상여금 지급제한, 공시강화,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변동보상을 순이익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합의함.

6) 위기 상황에서 은행이 1개월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기준임. 유동자산을 위기상황시 30일간의 순현금유출로 나눈 비율이 100%를 초과하여야 함.

7) 장기적인 유동성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1년 이상 장기적·고정적 투자활동은 1년 이상의 장기적 안정적 자금조달로 뒷받침되도록 규제한다는 의미. 사용가능한(available) 안정적 자금을 요구되는(required) 안정적 자금으로 나눈 비율이 100%를 초과하여야 함.

## 2) 위기 이후(post-crisis) 체제 :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체제

-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위기 이후(post-crisis) 체제로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 체제” (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를 채택함.
- 구체적인 5대 정책목표로 G20 재무장관들은 ▽ 지속가능한 재정(sustainable public finances), ▽ 물가 안정(price stability), ▽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견고한 금융시스템 (stable, efficient and resilient financial systems), ▽ 고용창출(employment creation), ▽ 빈곤축소(poverty reduction)를 제시함.
- 동시에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각국 정책과 프로그램이 합의된 공동목표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상호평가과정(mutual assessment process)을 진행하기로 함.

[표 8]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체제를 위한 상호평가과정

① 회원국이 공유할 정책목표에 합의하고, 정책 대응을 상호 평가 * 경상수지 적자국 : 민간저축 증대 및 재정건전성 확대 * 경상수지 흑자국 : 국내소비, 투자 등을 진작 ② IMF가 정책감시를 강화하여 상호평가를 지원 ③ 상호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후속조치에 합의 <sup>8)</sup>
---

- 위기 이후 체제는 핵심적으로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 극복과 새로운 성장모델 모색임.
- 글로벌 불균형은 전 세계적인 경상수지 적자 혹은 흑자의 불균형을 의미함. 현재 경상수지 적자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곳이 미국임.
- 글로벌 불균형에 기반한 경제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 경상수지 불균형은 “중국 등 경상수지 흑자국 → 외환보유고 확대를 위한 미국 국채 대량 매입 → 미국의 저금리와 자산시장 거품 유발 → 자산시장 거품 붕괴 → 경상수지 흑자국의 수출급감” 을 일으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이 될

8) 2010 G20 준비위원회, <http://www.g20.go.kr/01about/about0104.jsp>

수 없다는 인식임.

○ 하지만,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경상수지 적자국은 소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고, 흑자국은 수출중심 경제성장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하기 때문. 또한 글로벌 불균형의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임.

□ 가장 큰 문제는 위기 이후 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한 정책 감시·감독 역할이 IMF에 부여됐다는 점임. IMF가 여전히 긴축재정을 포함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대부조건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IMF의 정책감시는 각국 정부가 양질의 사회정책과 고용 등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게 할 것임.

□ 새로운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체제에 고용과 빈곤감축이 주요 정책 목표에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목표에 비해 우선순위가 뒤쳐져 있음. IMF의 정책감시는 ‘위기-이후’ 체제를 추가적인 노동시장 탈규제화와 사회적 불평등 강화에 기반한 체제를 만들 것임. 즉, ‘신(新)성장 잠재력 확충’ 이라는 미명하에, 단체 교섭 등 노동시장의 제도와 과정이 강화되기보다 약화될 우려가 존재함.

### 3)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 G20은 기존 국제기구를 활용한 위기 극복으로 합의하면서, IMF 등 기존 기구의 개혁을 주요 의제로 논의함. 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G20 위기 극복 대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국제금융기구 개혁은 ① 지배구조 개혁과 ② 국제기구 역할 재설정 및 감시활동 강화임.

□ IMF 개혁에 있어서, G20은 대단히 미약한 수준의 쿼터(지분율)와 투표권을 신흥개도국으로 이전하기로 할 뿐, 그동안 비판의 핵심이었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음.

○ 현재 IMF 쿼터는 과잉대표된 국가에서 저대표된 국가로 최소 5%를 이전시키기로 함. 하

지만 투표 개혁에 관한 추상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의 투표권이 축소되고 어떤 국가의 투표권이 강화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음. 서울정상회의에서 세부 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세계은행의 경우 지난 4월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 합동회의에서 지난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개도국과 신흥국의 투표권을 3.13% 증가시켜, 전체적으로 47%로 증가시킴. 이 합의로 중국의 세계은행 표결권은 2.77%(6위)에서 4.42%(3위)로 확대되고, 한국의 경우 22위(0.99%)에서 16위(1.57%)로 상승함. 미국은 지분(15.85%)과 거부권을 그대로 유지함.

**세계은행 표결권 지분 순위**

순위	국명	표결권 지분 (단위 %, 괄호안은 변경전)
1	미국	15.85(15.85)
2	일본	6.84(7.62)
3	중국	4.42(2.77)
4	독일	4.00(4.35)
5	프랑스	3.75(4.17)
	영국	3.75(4.17)
⋮		
16	한국	1.57(0.99)

자료: 세계은행

그림 2 ) 경향신문(2010.4.26)

- 결국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과 의결권은 바뀌지 않고, 유럽 국가의 표결권을 중국, 한국 등 신흥개도국으로 이전시킨 것에 불과함. 하지만 국제금융기구의 정책에 의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주변부 저소득국가들의 투표권 확대에 있어서는 어떠한 진전도 없음.
- 한편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IMF 구제조건에 대한 근본적 평가와 개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IMF가 '위기 이후 '(post-crisis) 관리체제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임.

- 1980년대와 90년대 주변부·반주변부 국가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집행한 것으로 악명 높은 IMF는 현재 위기 과정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반민중적인 구제조건을 적용하고 있음.
- 2008년 ~2009년 위기 과정에서 일부 중유럽과 동유럽 국가는 재정난 극복을 위해 IMF에 긴급대출을 신청하여 교부받음. IMF는 재정적자 축소를 대출협정 조건으로 포함시킴. 동시에 G20 국가에 대해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 정책(적자확대)을 장려함. 2009년 경기가 IMF 예측보다 더 위축되고 긴급대출조건에 대한 대중적 반대가 거세지자, 일부 국가의 대출조건을 완화시킴.
- 예를 들어, GDP가 14~18% 하락하고 실업률이 20%를 넘었던 라트비아와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에 대해, IMF는 처음에 2009년 적자가 각각 GDP의 5%와 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구. 나중에 최초 재정적자 목표치의 8% 포인트 초과를 허용. 하지만 이미 두 국가에서는 교육과 의료 등 공공부문의 대규모 감축으로 지속가능한 경기회복에 필요한 투자가 축소되는 상황 발생함. 더욱이 IMF는 2010년 두 국가에 대해 재정건전화(fiscal consolidation), 즉 적자 축소를 요구하고 있음. 이들 국가가 지속가능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교육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IMF의 구제조건은 이들 국가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뜨릴 것임.
- 결론적으로 근본적 반성과 개혁이 지체된 상황에서, IMF는 긴축적인 경제정책, 사회불평등을 조장하고 공평한 분배를 방해하는 반사회적인 정책을 권고할 가능성이 큼. 이는 지속가능 균형성장 체제의 올바른 형성에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임.

#### 4) ‘좋은 일자리’ , 사회보장과 ILO

- 국제노총과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국제산별연맹 등 국제노동계가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좋은 일자리’ 와 사회보장은 런던정상회의에서부터 언급되기 시작하고,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강조됨.
-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성장과 고용 회복하기” (Restoring growth and jobs)라는 주제 아래, 성장 촉진을 통한 고용 창출, 교육과 직업훈련 투자 강화, 취약 계층에 초점을 맞

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진행된 고용정책에 대한 ILO 평가 등을 제안함.

○ 피츠버그에서는 고용 창출(job creation)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job quality)을 함께 언급한 점이 특징임. “좋은 일자리를 (경기) 회복의 중심에 놓기” (Putting Quality Jobs at the Heart of the Recovery), “좋은 일자리를 지원하고, 고용을 유지하며, 고용 증가를 우선시하는 경기회복 정책의 시행” 등을 약속함. 나아가 “실업자와 실업 위험 계층에 대한 소득, 사회보호 및 직업훈련 지원” 이 합의됨.

□ 또한 “(위기라는) 현재의 도전 때문에 국제노동기준이 무시되거나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합의(피츠버그 정상회의)를 통해, 노동권 억압을 통한 노동비용 축소로 위기 극복이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

□ 한편, G20 정상회의는 고용 정책과 직업훈련 정책 평가와 후속조치를 ILO에 부여함으로써, 향후 G20 프로세스에서 ILO의 역할을 인정함. 나아가 ILO가 지난 2009년 6월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일자리협약(Global Jobs Pact)의 주요 구성요소를 인정함. 또한 “국제기구들은 위기 및 위기이후 분석과 정책수립 활동에 있어서 ILO의 기준과 위 협약의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 고 언급함.

□ ILO는 IMF, 세계은행, WTO 등 다른 국제기구와는 달리 워싱턴과 런던 정상회의에는 초청받지 못함. 피츠버그 정상회의에 이르러서야 공식 초청받아 참여하게 됨. 하지만 IMF와 세계은행에 비해 ILO의 위상과 역할은 G20 프로세스에서 여전히 보조적인 위치에 머무르고 있음.

□ 전체적으로 G20 프로세스에서 좋은 일자리, 노동권, 사회보장 등의 의제는 국제노동계의 개입으로 일정하게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건전재정, 물가안정 등에 비해 부차화된 목표로 취급되고 있음. 또한 다분히 ‘정치적 선언’에 가까우며, 각국에서 실제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임.

## 5) 개발도상국 지원, 기후변화, 무역

### (1) 개발도상국 지원

- 개도국 지원은 세계적 수준에서 위기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라는 문제와 G20 비회원국에 대한 정치적 배려 문제가 중첩되어 있음.
- “G20이 세계경제 협력을 위한 진정한 최상위 포럼이 되기 위해서는 G20에 참가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G20이 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재 G7이 ‘선진국들만의 클럽’ 이라고 비난받는 것처럼 G20도 역시 ‘그들만의 클럽’ 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9)
- G20은 최빈국의 식량, 연료, 금융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부채탕감 등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충족하기 위한 각종 약속의 이행을 재확인함.

[표 9]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00년 9월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세계 189개국 정상과 정부대표들이 새천년을 맞아 인권, 빈곤 등 인류가 직면한 주요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노력을 약속한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 을 채택함. 2001년 56차 유엔총회는 위 선언 이행을 위한 8개 과제를 ‘새천년개발목표(MDGs)’ 로 명명하고, 이 목표들을 이행하기 위해 통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결의함. 2015년까지 ①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②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③ 남녀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④ 아동사망률 감소 ⑤ 모성보건 증진 ⑥ HIV/AIDS, 말라리아, 각종 질병 퇴치 ⑦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⑧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등 8개 목표를 달성하기로 함.

-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국제농업식량안보기금을 조성하여, 세계은행에 수탁해 운영키로 함. UN 등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저소득 국가의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생활환경 개선, 농업부문 경쟁제한 요소 축소 등을 추진키로 함. 이에 따라, 올해 1월 세계은행은 농업식량안보기금 출범(안)을 결의함.

9) 최희남,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의제총괄국장, [http://www.korea.kr/newsWeb/pages/special/g20/g20Section/view.do?section\\_id=g20\\_sec\\_1&newsDataId=148686173](http://www.korea.kr/newsWeb/pages/special/g20/g20Section/view.do?section_id=g20_sec_1&newsDataId=148686173)

- G20은 최빈국들에게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출연을 자발적으로 증가시키기로 함. 또한 빈곤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2) 기후변화 대응 - ‘누가 어떻게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 기후변화 대응 논의는 G20 정상회의 의제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 더욱이 기후변화 논의는 G20이 아니라 유엔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함.

- G20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을 포함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목적, 조항 및 원칙을 재확인함. 코펜하겐 회의(2009.12)에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포괄적 합의는 감축(mitigation), 적응(adaptation), 기술(technology) 및 재원(financing)을 포함해야 한다고 합의함.

○ 하지만, 코펜하겐 UN기후변화회의에서는 결국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함.

- 또한 G20은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과소비를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적절한 기간 동안 합리화시키고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함. OECD에 따르면, 2020년까지 화석연료보조금 철폐는 2050년까지 10%의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나아가, “청정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개도국에서 그러한 프로젝트를 위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함.

- 전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G20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재원 조성에 있어서, 중국·인도 등은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최근 온실가스 배출 주범은 개도국’이라고 맞서고 있음. 또한 기후변화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 장이 G20 회의인지 유엔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림. 중국은 G20 회의가 아니라 유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3) 보호무역주의 배경 - '자유' 무역 보호

- G20은 '자유시장 경제 원칙 준수', '새로운 투자 또는 상품·서비스 무역에 대한 장벽 신설 자제', 보호무역주의적 조치의 원상회복 등을 합의함. 또한 추가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해 '2010년까지 WTO 도하개발의제 타결 추진' 을 합의함.
- 보호주의적 조치들은 즉각적으로 WTO에 고지되며, WTO는 감시활동을 통해 분기별로 이행 사항 공개하기로 합의함. 또한 재정정책과 금융부문 지원 조치를 포함한 국내 정책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함.
- G20은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 타결을 이끌어내기로 했지만, 실제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한편, 자유무역 확산의 핵심적인 수단인 WTO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자유화 조항과 현재 G20에서 논의·합의되고 있는 금융규제 강화 방안 사이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WTO 도하개발의제 서비스협정(GATS)은 금융서비스 자유화를 포함하고 있음.
- 한미 FTA는 '신금융서비스', 모든 새로운 형태의 제공 방법과 당사국 영역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음. 신금융서비스는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의 비중이 높음.
- WTO 서비스협정과 FTA는 공통으로 금융자본에 대한 정부 규제의 엄격한 제한(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 외국 투자자에 대한 정부 개입의 엄격한 제한(이행의무부과 금지 등) 등 현재 G20 금융규제 대책과 불일치함.

### 3. G20 문제점

- G20은 지난 20년 동안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불평등을 발생시킨 신자유주의 정책의 중단과 이를 위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 금융화에 기반한 자본주의 체제 위기를 ‘봉합’ 하는 데 그치고 있음.
- G20 역시 G7/G8과 마찬가지로 대표성(representativeness), 합법성(legitimacy), 포괄성(inclusiveness), 투명성(transparency), 민주성(democracy) 등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
  - G7/G8에 비해 대표성이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절대 다수 국가 특히 국제금융기구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주변부 국가들의 참여가 배제됨(대표성의 문제).
  - G20 회원국이 전적으로 미국을 위시한 G7/G8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됨(정당성의 문제).
  - G20 정상회의는 합의문(커뮤니케)을 제외하고는 그 이외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투명성의 문제).
  -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음(포괄성과 민주성의 문제).
- G20은 IMF, 세계은행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 집행자를 근본적인 개혁과 평가 없이 복권시킴.
  - IMF는 1990년대 워싱턴컨센서스에 따라 세계 각국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주도한 것으로 악명 높음. 공공병원과 공립학교를 폐쇄하고, 공공부문 지출을 삭감하며, 도로 보수 공사 등 사회인프라 투자를 중단하고, 공공은행이 기업에 대출해준 돈을 조기 회수할 것을 종용함. IMF는 ‘사채놀이’ 하는 탐욕스러운 기구이며, ‘투기자본의 보증인’ 역할에 충실함. 이에 IMF에 대한 문제제기와 저항이 끊이지 않았음. 따라서, IMF는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핵심 당사자이며 해체 혹은 최소한 근본적 개혁의 대상임.

○ 그럼에도 IMF는 G20 정상회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받음. ①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 위기비용의 금융권 분담방안 초안 마련 ②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체제 수립을 위한 ‘상호평가과정’에서 주도적 역할 등. 사실상 G20 정상회의의 ‘사무국’ 역할을 해왔음.

○ 금융안정위원회(FSB) 역시 금융안정포럼(FSB)이 확대·개편된 기구인데, 이 역시 금융안정포럼의 근본적인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채 주요한 역할이 맡겨지고 있음. 금융안정위원회는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SIFIs)’에 대한 건전성 기준 개발, 대형금융기관 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충격이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개선 방안, 대형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수단과 체계의 마련 등 금융시장 감시·감독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됨.

○ 결론적으로 G20은 세계경제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 평가와 이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근본적 개혁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봉합’하고, 신자유주의 체제의 위기를 관리하여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가 촉발할 때만 하더라도, IMF를 대체할 수 있는 보다 급진적인 방안(eg. 세계금융기구 등)이 제출되기도 했으나, 현재 이러한 방안은 의제로 형성되지도 않고 있음.

□ 금융규제 방안은 대형화·겸업화 규제, 금융거래세 도입 등 ‘알맹이’가 빠진 채 논의되고 있으며, 각국의 실행 의지도 의심스러움.

○ 헤지펀드에 대한 정부 등록과 정보공개 요구, 민간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해당 정부에 등록, 국제행동규범 준수), 조세피난처 명단 공개 등의 대책을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오히려 그리스 위기를 계기로 유럽연합(EU) 차원의 헤지펀드 규제 방안(EU는 회원권 밖에 소재를 둔 헤지펀드가 역내 활동을 할 경우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동시에 거래와 부채 내역도 보고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이 ‘보호주의’라고 비판하고 나서는 등 정치적 선언과 실제 이행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함.

○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제적인 공조와 조정, 대화를 통해 적절한 “규제”가 실행된다면 국제금융부문 자체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인식임. 즉, 금융부문의 팽창과 실물부문의 위축, 금융투기 확산 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고 미래의 투기거품 형성을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감독체제와 구체적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자본거래 규제를 위해 제안된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FTT)와 같은 보다 진보적인 제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핑계로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음. 하지만, 금융거래세는 이미 브라질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수년에 걸쳐 현실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음. 또한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에 대한 제한 조치 역시 논의가 지지부진함. 미국의 ‘볼커 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마지막으로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출범시켜, “사실상 새로운 국제금융 감독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위기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 아무런 평가와 개혁 없이, 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이 부여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좋은 일자리, 노동기본권 억압, 소득불평등 심화 등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조치는 부차화되거나 ‘립 서비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위기 이전부터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악화된 소득불평등과 빈곤은 금융위기를 계기로 더욱 확대·심화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국제노동계는 지속적으로 ‘고용 없는 회복’ 경향을 우려하면서, 좋은 일자리와 사회보장을 경기회복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함.

○ G20은 일자리와 사회보장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임. 특히, 앞서 제기했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체제” 구축을 위한 상호평가과정이 IMF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일자리와 사회보장 강화는 심각히 훼손될 여지가 많음.

○ “이 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고 공평하며 균형잡힌 정책 분석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임. 우리는 상호 평가 프로세스에 있어서 IMF가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을 지원할 것을 요청함. IMF는 G20 각 회원국의 정책이 전체적으로 보다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세계 경제의 추이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미래지향적 분석을 개발하고, IMF의 기존 양

자·다자 감시 분석과 더불어 세계경제동향, 성장패턴, 정책조정 제안을 G20과 IMFC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요청함.”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문 중)

○ 좋은 일자리와 사회보장, 노동권 보장은 위기 이후 체제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원칙이 되어야 함.

## 4. 서울 정상회의 주요 의제와 대응 방향

### 1) 서울 정상회의 주요 의제

#### □ 금융규제 개혁과 국제금융기구 개혁

○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방안, 대형금융기관규제, 건전성규제 등 금융규제 개혁이 핵심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임. 또한 IMF의 쿼터개혁을 마무리 할 예정임. 이외에 금융기관 경영자 보상체계 규제 등도 논의될 예정.

#### □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 위기 이후 관리 방안

○ 위기 이후 체제 형성을 위한 각국의 정책공조 문제, 상호평가과정, 글로벌 불균형 해소 문제 등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임.

#### □ G20 정상회의 제도화

○ 피츠버그 정상회의의 선언에 기반하여, G20을 국제지배구조로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임. 정상회의 운영 원칙, UN 등 국제기구와의 관계, G7/G8과의 관계 등

#### □ 기후변화, 에너지, 빈곤국 지원, 무역 문제

○ 위기 대응의 측면을 넘어서, 빈곤국 지원 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개도국 빈곤해소와 국가간 개발격차 해소 방안, 자유무역 등이 논의될 것임.

## 2) 국제노동계 대응 개요

- 국제노총(ITUC),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국제산별연맹(GUFs) 등 국제노동계는 1차 워싱턴 정상회의 때부터 G20 노동조합지도자회의(Trade Union Summit)를 개최하여, 세계노동조합선언을 발표하고, 개별 국가 정상 면담 등을 통해 G20 의제 형성과 논의 방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왔음.
- 국제노동계의 핵심적인 대응 방향은 ①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 재정·통화 확장정책 지지(워싱턴, 런던) → 고용 수준이 회복될 때까지 적절한 경기부양정책 지속(피츠버그) ② 좋은 일자리와 사회보장 확대가 경기회복에 있어서 핵심적 원칙, ③ 건전재정, 노동시장 탈규제 등을 권고하는 IMF 구제조건 반대와 개도국의 투표권을 대폭 확대하는 IMF 지배구조 개혁, ④ 위기비용 금융권 분담과 세수 확대, 추가적인 투기거품 붕괴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 ⑤ 위기 이후 체제로 채택된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체제’의 형성 과정에서 근본적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IMF 중심의 정책 개입 반대와 고용·사회보장 분석에 있어서 ILO 역할과 권한 강화, ⑥ “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 조세피난처 규제 등 금융 규제 강화 ⑦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등을 강화하여 불평등과 불안정성에 대처 ⑧ 노동조합 대표자의 참가 보장 등임.
- 국제노동계는 G20이 G7/G8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괄적이며, 세계 금융경제위기에 대응과정에서 G20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비판적 개입 전략을 택하고 있음. 비판적 개입의 경로로는 ① G20 노동조합지도자회의 개최를 통한 성명서 발표 ② 개최국 정상과의 간담회를 통해 입장 전달<sup>10)</sup> ③ 회원국 정상들과의 개별 간담회 - 각국 노총이 해당국 정상과의 간담회를 조직함. ④ IMF, 세계은행, ILO 사무총장과의 간담회 등임.

10) 2차 런던 정상회의 때는 고든 브라운 영국 수상, 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때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제노동계 지도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담회를 갖고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함.

### 3) 대응 방향

#### □ 10대 대응 기조

- ①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금융자본 통제 획기적 강화 - 은행의 대형화·겸업화 금지와 금융거래세 도입
- ② 신자유주의 정책 집행자 IMF 복권 반대
- ③ 실패한 미국식 금융자유화 모델을 토대로 한 FTA와 WTO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중단
- ④ G20에서 논의·합의되고 있는 금융규제 경향과 상반되는 이명박 정부의 구시대적 자본시장통합법 및 금산분리완화 정책 폐기
- ⑤ 위기-이후 체제를 위한 핵심 가치로 ‘노동기본권 보장’, ‘좋은 일자리’, ‘사회보장 확대’ 를 채택·실행
- ⑥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녹색일자리 장려하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지
- ⑦ 세계적 차원의 기후·환경 재앙을 피하기 위한 노력과 상반되는 4대강 사업 중단, 녹색성장기본법 폐기
- ⑧ 개도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확장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의 잘못된 구제조건 부과 중단
- ⑨ G20 빌미로 노동기본권 억압하고 공안정국 조성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 G20 경호법 폐기
- ⑩ 위기 비용 전가하는 G20 규탄

[표 10] G20에 맞선 주요 대응 방향

주요 대응 방향	핵심 요구	국내 연관 쟁점과 요구
금융자본 통제 획기적 강화	은행 대형화겸업화 금지 금융거래세 도입	자본시장통합법 폐기 금산분리완화 정책 폐기
미국식 금융자유화 모델을 토대로 한 FTA와 WTO 도하 개발의제 협상 중단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 중단 무차별적 FTA 협상 중단	한미 FTA, 한EU FTA 전면 재검토 한중 FTA 등 새로운 FTA 추진 중단 WTO 협상 중단
‘좋은 일자리’와 ‘사회 보장 확대’를 위기-이후 체제의 핵심 원칙으로 채택	공공지출 확대와 사회인프라 투자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실업보험 혜택 강화 등 사회보장 확대 IMF의 정책감시 중단과 ILO 역할 강화	비정규직, 인턴 등 불안정 일자리, 토 목건설 중심의 지속불가능한 일자리 확산 중단 사회서비스와 공공투자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인력감축, 유연근무제 도입, 파견업무·기간제 예외 확대 등 ‘좋은 일자리’ 파괴 정책 중단
위기를 핑계로 한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시장 유연화 중단 임금하락 정책 중단	민주노조 말살 중단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 노동조합법 재개정 최저임금 현실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녹색일자리 장려, 정의로운 전환 지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과감한 감축을 위한 합의 도출 노력 저탄소 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적 지원	‘녹색’을 가장한 개발프로젝트 중단 4대강 사업 중단 녹색성장기본법 폐기
저소득 주변부 국가들에 대한 지원 강화	새천년개발목표 이행 국제금융기구 구제조건 강제금지	저소득 주변부 국가 지원 강화
근본적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IMF, 금융안정위원회(FSB) 복권 반대	IMF 지배구조 근본적 개혁(저소득 주변부국가의 투표권 획기적 강화, 최소 50% 보장) IMF 구제조건 전면 재검토 금융안정위원회 근본적 개혁	
위기비용 전가하는 G20 규탄		
G20 빌미로 민주주의의 말살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 - 군대동원까지 가능한 G20 경호법 폐기		

□ 은행의 대형화·겸업화 금지와 금융거래세 도입을 중심으로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가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함.

○ 최근 유로화와 그리스 정부부채 등에 대한 헤지 펀드의 공격에서 볼 수 있듯이, 투기적 거래는 다시 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함. 거대 다국적은행그룹들도 금융당국의 적절한 감시를 받지 않은 채, 이전 영업 형태로 복귀하고 있음.

○ 다시 한번 위기의 교훈을 되새기고, 위기의 근원을 치유하기 위해, 금융 통제를 위한 획기적 대책과 실제 이행이 요구되는 때임.

○ 체계적 위험을 유발하는 은행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강력히 규제해야 함.

○ 단기 투기성 금융거래를 규제하고, 추가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함.

○ 헤지펀드·사모펀드 규제, 조세피난처 규제, 신용평가기관 규제, 금융회사 보상체계 개선 등이 강화되어야 하며, 즉각 시행되어야 함.

[표 11] 사례 1 : 브라질 금융거래세 도입

○ 2009년 10월, 브라질은 상파울루 주식시장과 국공채와 같은 확정수익상품에 투자되는 외화 투자금에 대해서 2%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함. 투기 목적의 단기자본 유입을 억제하고 생산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부과됨. 생산 부문에 대한 직접투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주식투자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브라질에서 처음 실행됨. 지나친 헤알화 평가절상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실행됨. 한편, 브라질은 2008년 3~10월에도 국공채와 같은 확정상품에 대해 1.5%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한 바 있음. 그해 10월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으로 중단되었다가, 2009년 10월 다시 도입됨.

[표 12] 사례 2 : 벨기에 토빈세 도입

벨기에 의회는 2004년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와 유사한 스파흐세(Spahn Tax) 도입 법안을 승인함. 정상적인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0.02%의 세율을 부과하고, 투기적 목적의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최고 80%까지)을 적용하는 방안임. 다만 유럽경제통화동맹 회원국 전체가 유사한 법안을 채택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함. 단독으로 토빈세를 시행할 경우 국제자본이 토빈세가 없는 국가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 서임.(조세연구원, 2009: 5).

□ G20에서 논의·합의되고 있는 금융규제 경향과 상반되는 한국 정부의 구시대적 금융자유화 및 규제완화 정책은 폐기되어야 함.

○ 은행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촉진하고 미국식 금융시스템의 도입을 전제로 한 자본시장통합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함.

○ 소수의 거대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 장악을 돕고, 거대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촉진하고, 자원 배분의 불평등성을 강화하는 금산분리완화 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함.

□ 실패한 미국식 금융자유화 모델을 토대로 한 FTA와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은 중단되어야 하며, 대안적 무역체제가 모색되어야 함.

○ 금융자유화, 개방화 조항과 금융규제 당국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항을 담고 있는 WTO 서비스협정(GATS)을 포함하는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함.

○ 개인 투자자가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양자간 FTA 등 다양한 형태의 무역·투자 협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

○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가 현재 무차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중, 한EU 등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대안적 무역체제가 모색되어야 함.

□ 위기 이후 체제 형성에 있어서 ‘좋은 일자리’와 ‘사회보장 확대’는 핵심적인 원칙이 되어야 함.

○ G20은 위기 이후 체제를 수립을 위한 ‘상호평가과정’에서 IMF에 각국의 정책을 감시하고 권고하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IMF의 성격을 고려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임.

○ IMF는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지출 삭감, 임금 삭감 등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정책들을 권고할 것임. 이는 위기 이후 체제를 위기 이전 체제(신자유주의)로 되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임.

○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체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난 20여 년 동안 전 세계 민중을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중심에 놓고 해법이 찾아져야 함.

○ 이를 위해 노동권과 적절한 임금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 불평등을 축소하는 사회보장 확대를 중심에 놓는 체제 구상이 요구됨. 더불어 ILO의 “사회보호망”(social protection floor)<sup>11)</sup>이 이행되어야 함.

○ 또한 고용과 직업훈련 정책에 있어서 ILO와 긴밀히 협력하고, 2009년 6월 ILO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일자리협약(Global Jobs Pact)의 주요 구성요소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함.

○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 인턴 등 불안정 일자리, 토목건설 중심의 지속불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중단하고, 사회서비스와 공공투자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나아가 공공부문 인력감축, 유연근무제 도입, 파견업무·기간제 예외 확대 등 ‘좋은 일자리’ 파괴 정책도 중단해야 함.

○ 또한 실업자 대책이 개선되고 강화되어야 함. 현행 실업급여 수급기간(3~8개월, 평균 4개월)을 6~12개월로 연장하고, 수급율을 현행 34% 수준에서 50% 이상으로 인상하며,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 실업수당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 위기를 핑계로 노동기본권 억압하고 노동조건·임금을 저하시키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함.

○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위기를 핑계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키지 않겠다”는 선언이 지켜져야 함.

○ 또한 국제기구들의 위기 및 위기이후 분석과 정책수립 활동에 있어서도 ILO의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G20 합의사항이 지켜져야 함.

○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의 노동권 탄압, 임금 억압, 단협해지 유도 정책은 즉각 중

11) 기초보건의료에 대한 보편적 접근, 노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기초연금, 아동 수당, 빈곤 노동자층, 반실업,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 등

단되어야 함. 동시에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도 중단되어야 함.

○ 이명박 정부는 G20에서 합의한 노동권과 ILO 기준 존중의 약속을 지켜야 함.

□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녹색 일자리 장려, 저탄소 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 (Just Transition)이 이뤄져야 함.

○ G20은 UN 기후변화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또한 최근 설립된 “기후변화 재원에 관한 UN 고위급 자문단” (UN High Level Advisory Group on Climate Change Financing)에 시민사회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기후변화 대응이 고용창출로 최대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개발해야 함.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저탄소 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 필요성은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함.

○ ‘녹색’ 을 가장한 토목건설 프로젝트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함. 또한 환경파괴적인 토목건설사업과 원전사업을 ‘녹색’ 으로 포장한 녹색성장기본법도 폐기되어야 함.

□ 새천년개발목표 이행 등 저소득 주변부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최빈국의 식량, 연료, 금융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가 즉각 취해져야 하며,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충족하기 위한 각종 약속이 이행되어야 함.

○ 저소득 주변부 국가들이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잘못된 구제조건은 중단되어야 함.

[참고자료]

국제노총·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G20 정상회담에 대한 세계노동조합선언” 등 관련자료, [www.tuac.org](http://www.tuac.org), [www.ituc-csi.org](http://www.ituc-csi.org)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G20 정상회의 참석결과 보도자료 등 관련자료, [2010g20.korea.kr](http://2010g20.korea.kr)

김병덕,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 은행산업을 중심으로”

김용범, “국제금융시스템 개혁과 G20 논의동향”

전창환, “G20 체제의 지향점과 가능성”

이종태, “파산한 금융시스템 근본적으로 바뀐다”

한국경제신문, “G20 주요의제 분석”

Canadian Labour Congress, “CLC bullet points : G8/G20 Sherpa notes”

Ian Townsend, “G20 Leaders' summits & future meetings”

G20 information centre (University of Toronto) [www.g20.utoronto.ca](http://www.g20.utoronto.ca)

Financial Times G20 page, [www.ft.com/g20](http://www.ft.com/g20)

Guardian G20 page, [www.guardian.co.uk/business/g20](http://www.guardian.co.uk/business/g20)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G-20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